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2024. 12.



고용노동부

차 례

I. 위탁사업명	1
II. 위탁사업 내용	1
III. 과업 내용	1
<1> 목적	1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IV. 입찰 개요	4
<1> 입찰 참가 자격	5
<2> 입찰 제출서류 및 신청	7
V. 제안서 작성요령	6
VI. 심사 및 결과 발표	6
VI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8
VIII. 기타 유의사항	9
IX. 문의처	10
※ 붙임 1~3	11
※ 서식 1~8	14

I

위탁사업명

- ☐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II

위탁사업 내용

- ☐ 사업개요

- 구직·실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위탁규모 : 45개 지방고용노동(지)청, 총 3,777백만원 이내 [붙임1 참조]

- *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그 간의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관을 선정후 위탁비 범위에서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횟수 등 협의·결정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최대 1년)

-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III

과업 내용

<1> 목적

-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을 통한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 프로그램 운영

- 고용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홍보와 고용센터·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모집
-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참여자에 대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실시
- 심리·정서적 (고)위험군과 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적극 연계·지원
- 그밖에 추진실적 보고, 관련서류 제출, 사업운영 정보 공유,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 협조 등

□ 추진 방식

- 고용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상담** 실시
 - * 심리상담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센터는 주 40시간(월~금,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운영기관이 합의하여 근무일 조정 가능
 - **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 요청 시 전화, 화상 등 비대면 상담 가능
- 필요시 같은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소속 다른 고용센터에 출장하여 근무

- 지원내용 : 50분 이상 상담 건에 대하여 1회당 6만원(상담사 1인당 1일 6건까지) 지급 * 30분 이상 50분 미만 상담 건에 대해서는 1회당 3만원 지급

□ 서류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적사항, 상담건수, 운영비 및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실적 보고

- 참여자에 대한 상담내용 등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24에 입력·관리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상담건수, 출장건수 등이 포함된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실적은 고용24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2025년 사업운영이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가능

☐ 지도·점검

-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침 등 위반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위탁계약 해지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평가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성과**는 외부 전문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공모에 반영**

* 성과평가와 관련한 계획은 '25년 1분기 중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통지 예정

☐ 사업 정산

-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대하여 정산

☐ 기타

- 과업의 주요내용 등(과업지시서)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시행지침 등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과 사전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1> 입찰 참가 자격

□ 신청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사업자)

- ① 고교·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스트레스 관리, 불안·우울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신청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

- 1)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④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3) 신청일 현재 신청 자격이 없거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2> 입찰 제출서류 및 신청

□ 신청 기간 : '24. 12. 18.(수) ~ '24. 12. 30.(월) 12:00

□ 제출 서류

○ 동 사업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② 입찰서(서식2), 제안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약서(서식6)

③ 공동수급협정서(서식7, 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⑤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등

☞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①~④을 담은 USB 1개(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를 함께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서류(②~④)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수행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거점센터 중 신청기관이 2개 미만으로 입찰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유찰된 거점센터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5일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24.12.31.~'25.1.6. 12:00)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공고 신청기관은 재공고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V 제안서 작성요령

- ☐ 제안서는 붙임 서식을 토대로 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안서 용지크기는 A4로 하고, 기본적으로 단색(필요 시 칼라)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 제본 또는 편철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면수(page)를 기재하되, '제안서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
- ☐ 사실에 입각한 실적자료를 제출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되, 증빙자료(100페이지 분량 이내)는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출
-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금액은 원단위로 작성하고, 작성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VI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절차

- 서면심사 → 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낙찰자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PT심사 실시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 출신(소속기관 소재지 기준)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
 -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신청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
 - ** 그밖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당한 운영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선정 가능**
 -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심사 기준

- 심사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4.9.13.)과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붙임4)을 따라 신청기관의 **기술능력**(80점 배점)과 **입찰가격**(20점 배점)을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된 **사업비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감점 부여**
 - * (예시) 예상 사업비 대비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 최대 15점 감점
 - **기술능력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PT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
 - *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음

□ 가·감점 사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성과 우수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㉔ **2024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

- * '24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5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24년부터 위탁계약 체결 방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고용센터 단위 →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 '25년 선정심사 시에는 '24년 평가결과만 반영하여 심사

㉕ 「직업안정법」에 따라 최근 3년('22~'24년) 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으로 인증받은 기관

○ **2024년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감점 부여**

- * '24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5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26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2년 연속 2회 이상 부여받은 경우 심사 제외

VII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붙임3 참조**]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득점 순, 배점항목이 큰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득점 순으로 결정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선정 가능
- 발표방법: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협상이 성사되면 상대방에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계약 체결(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은 생략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자) 간에 체결(‘25.1.10.(금)까지)

* 46개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고용센터 소장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 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8)’ 필수 제출

VIII 기타 유의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임
-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함
- ☐ 제출된 제안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허위서류 등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 ☐ 제안서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본 제안서에 따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귀속함

-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이 적용됨

IX

문의처

- ☐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센터(거점센터)에 문의 [붙임2 참조]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운영 고용센터	사업비 (천원)	상담목표 (횟수)
전체			3,777,000	62,950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초	99,900	1,665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68,100	1,135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성동광진	85,800	1,43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72,000	1,200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서울강서	71,400	1,190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강북성북	85,800	1,430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72,000	1,20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72,900	1,215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인천서부	66,600	1,11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부천	69,600	1,16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 남양주, 구리	135,600	2,260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고양, 파주	115,800	1,930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 용인, 화성	206,400	3,44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성남, 경기광주, 이천, 하남	137,400	2,29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 광명	127,200	2,12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 시흥	113,400	1,890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 안성, 오산	116,400	1,940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	40,800	680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강릉	32,400	54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원주	63,600	1,060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68,400	1,14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69,600	1,160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68,400	1,140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 마산	86,400	1,440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	72,600	1,210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 양산, 밀양	106,200	1,77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	38,400	640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 거제	106,200	1,770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대구강북, 대구동부, 경산	211,200	3,520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대구달성, 칠곡	138,000	2,300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포항	64,800	1,080
3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구미	67,800	1,130
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	33,300	555
3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안동	30,600	510
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광주광산	119,400	1,990
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전주	68,400	1,140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	42,000	700
3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	43,500	725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	57,900	965
4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순천, 여수, 광양	89,400	1,490
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공주, 논산, 세종	165,000	2,750
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	65,400	1,090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	66,600	1,110
4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 음성, 제천	24,180	403
45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	20,220	337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대표고용센터(거점센터)	문의처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350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66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5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9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186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62, 1778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4
8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729
9	충북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30
10	충북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032-320-8910
11	충북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34
12	충북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31-4599
13	충북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872
14	충북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96
15	충북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12
16	충북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930
17	충북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39, 1230
18	충북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19
19	충북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53
20	충북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73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051-860-1996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7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894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0951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3984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950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47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55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105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78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0-3221
3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3322
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37
3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52
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767
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182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29
3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22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27
4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21
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60
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30-6794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9576
4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20
45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18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I. 기술능력 평가	-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과업내용에 이해도 등 - 제안요청서의 방향에 대한 부합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사업계획(일정)의 체계성 및 적합성 - 사업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진행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의 적절성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 신청기관에서의 동일·사업 분야 수행실적 - 심리안정지원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신청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25
II. 입찰가격 평가	제시된 예산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최대 15점 감점)	20
총점	-	100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은 80점과 20점으로 유지하되,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정 불가함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고용노동부 제2024- 호	입찰일자	2024년 12월 일
	입찰건명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입찰 보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지)청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청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와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신청기관(사업자)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2. 사업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3. 인감증명서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년 12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입찰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	공고번호	고용노동부 제2024- 호	입찰일자	2024년 12월 일
	건명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금액	금 원정(₩)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일

입찰자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신청기관(사업자)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기관(사업자)명 : >

1. 신청기관(사업자)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① 인력현황

○ 총 종사자 수: 명(대표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 종사자 세부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주요경력	담당 업무

○ 현 신청기관(사업자) 소속 종사자 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진행자
 추가 채용 계획 ※ 별도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

② 조직현황

※ 별도 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직도 존재 시, 표 안에 표기

③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m²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적(m ²)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총합			
	상담실 1			
	상담실 2			
회의실 등	총합			
	회의실 1			
	회의실 2			
기 타(휴게실 등)				

* 상담실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④ 최근 2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첨부

⑤ 공동수급체 간 역할 및 협업 방안

※ 단독입찰 시 '해당 없음' 표기

○

-

*

2. 최근 3년('22~'24년) 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①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표기
- * 운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 연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및 실적
2022					■ (정량)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성과평가등급 등 성과확인 가능한 지표 ■ (정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예:우수사례 선정 등)
2023					
2024					

* 발주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을 위탁한 기관(부처)명 기재

** 사업비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 기재(단위: 백만원)

②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시 지적사항

- * 주요 지적사항 작성(건당 1점 감점)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도·점검시 '시정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주요 지적사항
			•예: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도·점검 시 ○○○ 사유로 시정요구 받음 •예: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워크넷(고용24) 아이디 회수조치됨

4. 기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O" 표시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 기재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				

② 2025년도 국가·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예정) 현황

* 국가 또는 자치자체로부터 취업지원사업(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제외)을 위탁 받았거나 위탁예정(공모 준비 중인 경우도 포함)인 사업 기재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비고
			■ (현황) 4가지 유형 중 택1 * 공모 준비, 신청·접수, 심사 중, 선정 ■ (사업비) 00백만원 ■ (사업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제안서

사업명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	------------------------

· · ·

제안기관명

1. 사업 목표

① 운영방향

○

-

*

② 사업 목표

* 정량적인 사업목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사업계획서 상 중요 목표를 기재

상담횟수	정신건강서비스 연계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기 타

2. 사업 추진계획

① 총괄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

-

*

② 세부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① 전반적인 운영계획(상담사 배치 및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계획(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센터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
- ③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상담사 교육계획,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취업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 ④ 고용센터와의 연계·협업에 관한 사항(관할 고용센터와 협력사업 및 그 내용, 고용센터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등)
- ⑤ 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등

○

-

*

3. 상담사 배치 및 인적자원 투자계획

① 인력 현황 : 총 00명

* 운영기관 선정 시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상담사로 배치할 예정인 인력 전체에 대하여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인력에 대한 이력사항(붙임4)과 직업상담사별 관련 자격증 사본은 1인당 3페이지 이내로 첨부(그림파일 용량 축소)

분야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	직위	전공 및 경력				4대보험 가입여부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책임자	교육원	홍길동	1970-05-10		박사	경제학	a 대학교	년 월	
강사	교육원	나강사	1975-05-05		석사	법학	b 대학교	년 월	

② 진행자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민간위탁사업 수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첨부

**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사 보호방안,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계획,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 작성

○

-

*

[참고] 2024년 상담사 임금수준(단위: 명, 천원)

상담사 수	전체 업무담당자 연봉 (성과급 제외)	평균 연봉 (성과급 제외)

- * 성과급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계산·작성
↳ 성과급: 고정적·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닌, 상담실적 등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 * 대표자(상담업무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의 연간 보수 총액은 제외

③ 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 계획

- * 신청기관에서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준수 여부는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

*

[참고] 2024년도 진행자 평균 교육이수 수준(단위: 시간)

상담사명	주요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시간
1인당 평균 교육이수시간: 00시간		
가나다	A과정, B과정 등 00회	15
홍길동	C과정, D과정, E과정 등 00회	5

4. 기대효과

- ※ 사업실시 전과 사업실시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

-

*

5. 사업예산 내역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6. 기 타

○

-

*

-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 다만,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붙임】

상담사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위 :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목적
필수	법인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4대보험 가입여부	심사 자료 조회를 위함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목적달성 후 필수항목에 대해 5년 동안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업심사 및 선정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으로 동의하셔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주하는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그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사)○○○ 대표이사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 귀하

확인자 (인)

※ 소속기관장 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 (사)○○○ 대표이사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 귀하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 ○ 회사(대표자 :)
2. ○ ○ ○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 ○ ○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약속서

당사는 '2025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진행자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업무담당 근로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4. 12.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